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03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7.

발의자 : 박용갑 · 최혁진 · 황정아
조승래 · 김한규 · 전현희
박정현 · 이해식 · 소병훈
이연희 · 정준호 · 황명선
윤준병 · 한준호 · 문진석
김영환 · 조인철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전기 · 가스 · 화재 ·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 · 개량 · 보수 등을 지원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2025년 1월 22일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사고 당시 959개 점포에 화재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, 대구 서문시장 등 역시 화재사고 이후 화재감시시스템을 설치했으나 잦은 시스템 오작동으로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.

하지만 현행법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,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시 시정요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전통시장 등에 안전시설물을 설치 · 개량 · 보수할 때 상인과
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, 관계 법령상 기준에 적합한
안전시설물을 설치 · 개량 · 보수하도록 하며,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
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0조 및 제20조의2).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2호 중 “전기 · 가스 · 화재 · 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”을 “전기 · 가스 · 화재 · 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(이하 “안전시설물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전기 · 가스 · 화재 · 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”을 “안전시설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시설자재를”을 “시설자재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방용품을”로, “노력하여야 한다.”를 “노력하여야 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 · 개량 · 보수하는 사업의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
2. 제65조에 따른 상인회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제20조의2제1항 본문 중 “전기 · 가스 · 화재 · 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 시설물”을 “안전시설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 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.

1.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

2. 소방용품의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 여부

3. 안전시설물의 성실시공 및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결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치 · 개량 · 보수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하는 사업의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
2. 제65조에 따른 상인회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(7) (현행과 같음)

제20조의2(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(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)의 화재·풍수해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·가스·화재·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,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전기사업법」, 「전기안전관리법」, 「도시가스사업법」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,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

<신 설>

(7) (생략)

제20조의2(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)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(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)의 화재·풍수해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·가스·화재·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,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전기사업법」, 「전기안전관리법」, 「도시가스사업법」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,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

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라 점검,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.

<신 설>

-.

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.

1.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

2. 소방용품의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 여부

3. 안전시설물의 성실시공 및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
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<신 설>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결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안전시설물을 설치·개량·보수한 사

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· ⑤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
② · ③ (생략)